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4월 2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철 과장(044-203-4510), 전성규 사무관(044-203-4503)

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 전면 시행

-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(이튜브: e-Tube) 본격 활용 -

- 산업부, 통합 관리 대상을 3천만 원 이상 장비까지 확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 기획부터 폐기 절차까지 「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(이튜브: e-Tube)」에 적용하고, 통합 관리 대상을 3천만 원 이상 장비까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『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』 (산업부 고시)을 5월 1일부터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힘.

*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: 이튜브(e-Tube) (www.etube.re kr)

○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『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』의 후속 조치로 **그동안 제반 산업기술혁신 법규에 산재되어 운영 중인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을 통합**하여 **장비 도입부터 운영, 폐기까지 모든 절차*를 이튜브를 통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에 의의가 있음.**

* 장비 기획→도입심사→구매→정보등록→이용·관리→처분(이전·폐기)

□ 앞으로 이튜브를 통해 **중소기업, 연구자 등 장비 이용자는 손쉽게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이용**할 수 있게 됐고, **장비를 보유한 기관도 장비 정보 등록, 장비 활용 계획과 실적 보고를 간편하게 처리**할 수 있게 됨.

○ 또한 사업 수행기관의 **적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**하고 **민간 장비 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, 장비 도입 심의 대상을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장비로 확대**하고, 타 기관 장비의 공동 활용과 **민간 장비의 임대 사용이 가능**하도록 심의 기준을 조정함.

○ 아울러 1억 원 이상 장비의 **도입심사 시기도 협약 후 90일 이내에서 협약 전으로** 앞당기고, **장비 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를 이튜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 진행하기로 함.**

□ 산업부는 지난해('13. 11. 21.) '이튜브'를 공식 오픈하고, 『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』을 발표하여 장비의 공동이용 및 통합관리를 선언한 바 있음.

○ 이후 전문가위원회 운영('13.12. ~ '14. 3.), 장비보유기관 및 이용자 대상 지역별 설명회('14. 3. 4. ~ 18. 1,725명), 장비 관리자 교육('14. 4. 3. ~ 4. 200명)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『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』에 반영함.

□ 『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』은 산업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의 정보/국회법령/정책고시/고시 2014-66호 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성규 사무관(☎ 044-203-450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전·후 규정 비교표

구분	기존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규	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장비기획	○공동활용장비는 기관별 자체 수요조사 실시	○3천만원 이상 단독, 공동활용장비 모두 사전기획 실시 - 공동활용장비는 e-Tube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
도입심의	○심의대상: 1억원 이상 장비 ○심의시기: 협약 후 90일 이내 ○심의기준: 중복성, 사업 부합성, 활용성 중심	○심의대상: 3천만원 이상 장비 ○심의시기: (1억원 이상) 협약 전/(3천만원 이상) 협약 후 90일 이내 ○심의기준: 타기관 공동활용, 렌탈 등 임대가능성 추가
장비구매	○통합관리대상 공고사업의 3천만원 이상 장비: 장비전문기관이 구매 지원 ○통합관리대상 이외사업: 수행기관 자체 구매	○3천만원 이상 장비: 모든 e-Tube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
장비정보 등록·관리	○3천만원 이상 장비: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, e-Tube에 각각 등록	○3천만원 이상 장비: 자산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-Tube에 등록
활용·이용	○장비보유기관별 개별시스템을 통해 장비사용자 지원	○e-Tube를 통해 장비이용 신청 ○장비이용료 산정, 수익금 관리기준 제시
장비관리	○선언적 규정	○장비 및 인력, 장비이력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제공
장비처분	○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만 개략적으로 제시	○e-Tube를 통한 장비 처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